

환경부령 제35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0년 1월 /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에너지의 회수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 등의 기준을 완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품질 회수기준을 마련하고, 하수처리오니, 동물성 잔재물 등의 재활용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사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집·운반중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 회수기준의 측정 기관 규정(안 제3조제3항 신설)

- (1)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에너지의 회수기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으로 정함.
- (2) 에너지의 회수기준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 측정하도록 함에 따라 측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변경신고 및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변경확인 기준 완화(안 제8조 및 제18조의2)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지정폐기물배출자는 신고하거나 확인받은 배출량보다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전년도 1년간의 월평균 배출량이 증가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도록 함.
-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지정폐기물배출자가 매달 변경신고 또는 변경확인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던 것을 1년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변경신고 또는 변경확인에 따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고품질 회수기준 마련(안 별표 5 제2호다목8)(신설)

-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품질 중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 이상, 2013년 1월 1일부터는 70% 이상을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함.
- (2) 사료, 퇴비 등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고품질의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기준 및 방법 확대(안 별표 5 제3호라목 및 제4호다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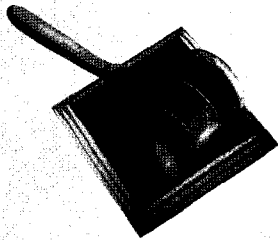
-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에 하수처리오니를 비탈면녹화토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 동물성 잔재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에 이용하는 방법, 폐주물사를 재생주물사로 재활용하는 방법, 폐이소프로필알콜을 정제이소프로필알콜로 재활용하는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함.
- (2) 재활용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새로운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자원의 순환적인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규제의 합리화(안 별표 5 제5호나목 및 다목)

- (1)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각각 다른 전용용기를 쓰도록 하던 것을 같은 전용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용기의 성능과는 무관한 용량·치수 기준을 폐지함
- (2)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바. 임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수집·운반중 유효기간 연장(안 별표 5 제6호마목)

- (1)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 부착하여야 하는 수집·운반중의 유효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 (2) 수집·운반중의 갱신 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임시 차량을 이용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환경부 공고 제2010-4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년 2월 17일 / 환경부장관

1. 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퍼센트로 상향 조정(안 제25조)

- (1)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 비율을 높여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대기오염 감소 효과 기대

나. 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 및 제5호의 자동차를 추가(안 제27조)

-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등 저공해 조치 필요성이 적은 Euro-4·5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을 특정경유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절감 등의 효과 기대

다. 법 제26조의4 제3항에 따라 반납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관리 및 활용 방법 규정 추가(안 제36조의 10 제3항 및 제4항)

- (1) 반납장치의 관리 및 재사용 방법 등을 명시화하여 자원재활용 등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업 효율성 제고 기대

라. 조기폐차 지원요건 완화(안 제37조 제1항 제1호)

- (1) 대기관리권역내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3년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에서 3년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완화하여 조기폐차 확대를 통한 대기개선효과 증대 및 국민 불만 완화